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인권이란?

기본적으로 인권은 단순히 인간이라는 이유로 해서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그렇기에 노인인권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하고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는 말한다.

이러한 노인인권과 관련하여서 유엔의 노인을 위한 5대 원칙이 있으며 ①자립, ②참여, ③보호, ④자아실현, ⑤존엄이 이에 속하며 나이가 들어 신체적 기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여 사회적 참여를 하지 못한다거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일을 함으로써 성취감이나 교육적 문화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아래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이유로도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받을 수 없다. 또한 노인인권은 국가와 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③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④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⑤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⑥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⑦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⑧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⑨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단계별 노인인권매뉴얼

노인복지시설의 인권매뉴얼은 시설 입소와 관련하여 단계별로 살펴볼 수 있다. 크게 입소이전, 입소초기, 입소 후 생활, 퇴소. 이렇게 총 4단계에 따른 인권보호매뉴얼을 제시한다.

1) 입소이전

시설에 대한 세부사항과 생활, 입소절차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입소관련 서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입소를 결정하기까지 어르신 본인의 선택권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

2) 입소 초기

입소를 한 초기에는 모든 생활이 낯설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시설과 이용방법에 대해 충분히 제공을 해야 하고 생활하시는 어르신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하는 분들에게 맞추어진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혹여나 불편사항이 있다면 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입소 후 생활 시

가장 기본적인 위생적인 환경과 질 높고 영양 많은 식사서비스 등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어르신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반영을 해주어야 하며, 각종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교육이나 시설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 주기 위하여 시설종사자 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인권교육은 꼭 필요하다.

4) 퇴소시

적어도 퇴소에 대한 어르신 스스로 의사표현의 자유권과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당한 이유로 시설에서 일방적으로 퇴소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전원이나 사후서비스 등 노후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노인학대 발견시 대응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2
- 기관 종사자는 노인학대행위 또는 학대의심증상을 목격하였거나 또는 학대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관리책임자) 및 기관장, 해당 관계공무원,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129)**, **경찰(112)**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 ② 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기관장은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
- ③ 심각한 상처 또는 노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경우 응급조치와 대응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④ 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 의료.법률.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따르면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와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나 방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노인학대의 유형은 크게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인학대 상담전화 1577-1389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행복한 집으로의 초대

부평행복마지 요양원

